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든든한TDF203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li> <li>- 위험 등급 변경(3등급&gt;4등급)</li> <li>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li> <li>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</li> <li>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li> <li>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</li> <li>- 직판 클래스 삭제</li> <li>- 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</li> </ul>
효 력 발 생 일	2024년 11월 29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표지	위험 등급 변경(3등급>4등급) 및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	- <추가>	-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부책임용전문인력: 권기훈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직판 클래스 삭제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
		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의 증권(종류S-T 및 S-P수의 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요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		온라인 직접판매 (J-e)	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	온라인 직접판매 (J-e)	<삭제>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며, 특히 <u>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</u>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<u>아니합니다.</u>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아니며, 특히 <u>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</u>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<u>않습니다.</u>
<b>[요약정보]</b>			
표지	위험 등급 변경(3등급>4등급) 및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</u> 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</u> 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

		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며, (현행과 동일)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	- <추가>	-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부책임용전문인력: 권기훈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 클래스 삭제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
		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		온라인 직접판매 (J-e)	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	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
		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		온라인 직접판매 (J-e)	<삭제>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직판 클래스 삭제	- Class J-e - Class J-Pe - Class J-P2e	<삭제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	직판 클래스 삭제	- Class J-e	<삭제>

구의 명칭		- Class J-Pe - Class J-P2e										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-	-	- 2024.11.29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위험 등급 변경(3등급>4등급)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예금보 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, 소득세법 개정사 항 반영, 직판 클래스 삭제,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 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부책임용전문 인력 추가												
5.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	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	- <추가>	-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부책임용전문인력: 권기훈												
6.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	금융투자회사의 영 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직판 클래스 삭제	가. (생략) 나. 종류형 구조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71 837 1015 2045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경영금융투자업자 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td> </tr> <tr> <td>S-P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경영금융투자업자 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S-P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종류형 구조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54 837 1498 2045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 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 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 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 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 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 구하는 수익증권</td> </tr> <tr> <td>S-P</td> <td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 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 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 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 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 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 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 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 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 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 구하는 수익증권	S-P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 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 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 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 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
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경영금융투자업자 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													
S-P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								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
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 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 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 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 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 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 구하는 수익증권														
S-P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 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 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 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 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														

			<u>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			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<u>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
		S-P2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u>	S-P2	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u>	
		J-e	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	J-e	<삭제>	
		J-Pe	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	J-Pe	<삭제>	

		J-P2e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	J-P2e <u>&lt;삭제&gt;</u>				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<u>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u> -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-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<u>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u> - <u>펀드규모 및 투자비중 업데이트</u> 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- <u>투자대상국가 업데이트</u>	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위험 등급 변경(3등급 >4등급)	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 가. ~ 다. (생략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b>&lt;정정 전&gt;</b>	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현행과 동일) 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b>&lt;정정 후&gt;</b>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직판클래스 삭제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매입 (1) (생략) (2) 종류별 가입자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71 1563 1015 1648"> <tr> <td>종류 (Class)</td> <td>가입자격</td> </tr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가. 매입 (1) (현행과 동일) (2) 종류별 가입자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54 1563 1498 1648"> <tr> <td>종류 (Class)</td> <td>가입자격</td> </tr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

		S	<p>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		S	<p>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u></p>
		S-P	<p>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		S-P	<p>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</u></p>

		<p>S-P2</p> <p>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u></p>	<p>S-P2</p> <p>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u></p>
		<p>J-e</p> <p>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</p>	<p>J-e</p> <p>&lt;삭제&gt;</p>
		<p>J-Pe</p> <p>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	<p>J-Pe</p> <p>&lt;삭제&gt;</p>
		<p>J-P2e</p> <p>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	<p>J-P2e</p> <p>&lt;삭제&gt;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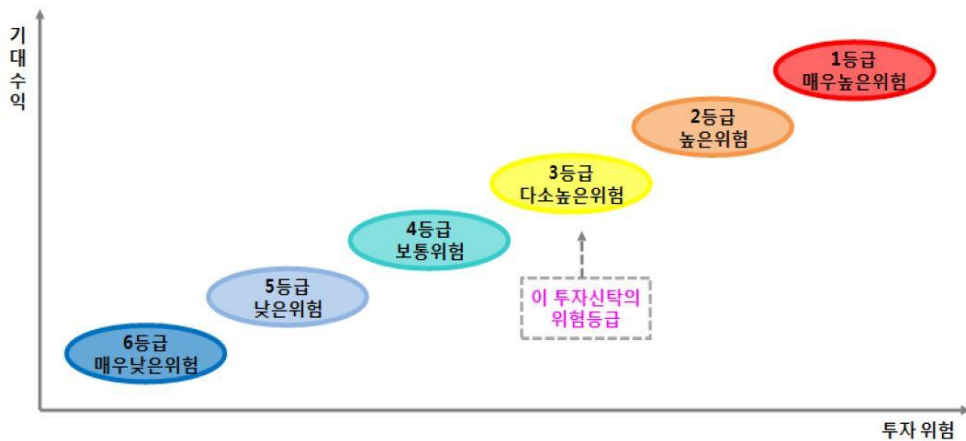
		(3)~(4) (생략) 나. 환매 (1) ~ (8) (생략) (9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<신설>  다. 전환 (생략)	(3)~(4)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~ (8) (현행과 동일) (9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중도환매 불가</td> <td>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</td> <td>중도환매 허용</td> </tr> <tr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/table> 다. 전환 (현행과 동일)	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○	○	○
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						
○	○	○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직판클래스 삭제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<u>Class J-e, J-Pe, J-P2e</u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u>Class J-e, J-Pe, J-P2e</u>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- <u>Class J-e, J-Pe, J-P2e</u>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<삭제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-<삭제>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- <삭제>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직판클래스 삭제	가. (생략) 나. 과세 (1) ~ (3) (생략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<u>Class C-P, C-Pe, S-P, J-Pe 가입자</u> - 분리과세한도: <u>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u> 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, S-P2, J-P2e, C-O 가입자</u>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(1) ~ (3) (현행과 동일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<u>Class C-P, C-Pe, S-P 가입자</u> - 분리과세한도: <u>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u> <u>연금소득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 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</u> <u>(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u>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, S-P2, C-O 가입자</u>						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						
1. 재무정보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						
2. 연도별 설정	최근 결산기 재무제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						

및 환매현황	표 확정		으로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 기준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으로 업데이트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11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	가. ~ 다. (생략) 라. (1)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(2)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(1)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(2) (현행과 동일)

**<정정 전>**

**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**

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·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6단계 투자위험등급 중 **3등급(다소 높은 위험)**으로 분류됩니다.
-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, 채권, 원자재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

※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[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-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]**

위험등급		분류기준
1등급	매우 높은 위험	-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-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2등급	높은 위험	-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3등급	다소	-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
	높은 위험	-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4등급	보통 위험	-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5등급	낮은 위험	-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6등급	매우 낮은 위험	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-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
- "고위험자산"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"중위험자산"은 채권(BBB- 등급 이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"저위험자산"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·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
-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·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

### [위험등급 분류기준 - 설정 후 3년 경과 시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수익률 변동성 (표준편차)	25%초과	25%이하	15%이하	10%이하	5%이하	0.5%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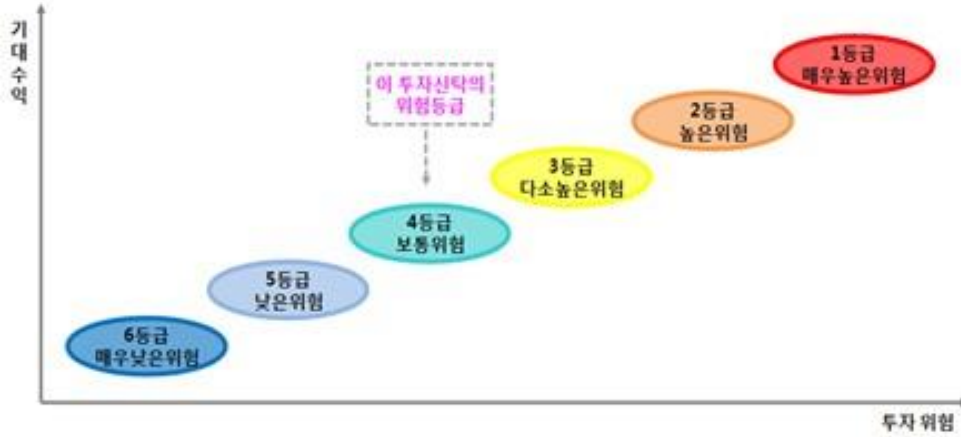
\*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: 일정 기간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,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.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.

※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### <정정 후>

####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·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은 **16.7570%**이며, 6단계 투자위험등급 중 **4등급(보통 위험)**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: 2024.11.07)
-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, 채권, 원자재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

※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[수익률 변동성 기준(97.5% VaR 모형 사용) - 설정 후 3년 경과 시]**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97.5% VaR	50%초과	50%이하	30%이하	20%이하	10%이하	1%이하

- \*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 $\sqrt{250}$ )를 곱해 산출
- \* 수익률 변동성 기준 :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**- 위험등급 변경 내역**

변경일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2024.11.29	3등급	4등급	▶ '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' 기준 위험등급 적용(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) - 수익률 변동성 : 16.7570%

<끝>.